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48호

개포현대1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125호(2017.4.13.)로 결정·고시된 강남구 개포동 653번지일대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같은 법 제20조제7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10월 24일
서울특별시 장

1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

가. 해제기한 연장구역

정비구역명칭	위 치	면 적(㎡)	비 고
개포현대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	강남구 개포동 653번지일대	35,682.4	-

나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: 2021.4.13.까지

(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해당기간으로부터 2년간)

2. 정비구역 해제기한 연장 사유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토지등 소유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같은 법 제1항제2호의 해당 기간 도래 전 연장 요청한 바, 주거환경의 계획 적 정비를 위하여 정비구역 해제 연장

3. 관련세부내용은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(☎02-2133-7141) 및 강남구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075)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.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49호

뉴서울아파트, 개나리·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·지형도면 고시

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739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 및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·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19년 10월 24일
서울특별시 장

1. 정비구역 지정

가. 정비구역의 명칭 : 뉴서울아파트, 개나리·열망연립 재건축 정비구역